

「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9. 5(금) 평창군수(농축산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9. 1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9. 15(월) 제20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농축산과장 이상필)

- 현행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, 전시판매장의 주소 및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,
-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하고, 전시판매장의 주소 및 전시판매 품목의 일부 수정을 통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 개정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, 판매장 주소의 도로명 주소로 수정, 전시판매 품목의 다양화로 농·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,

- 농·특산물 전시판매장 수탁운영 대상자 선정에 대한 “군수의 위탁 운영계획 공고기간 중 수탁운영 신청 하여야 한다” 라는 명확한 조문의 개정으로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 「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##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”을 “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”으로, “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(이하 “전시판매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횡계리 335번지”를 “대관령로 81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”를 “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
2.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및 도내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농·축·수·임산물과 지역특산품

제5조제2항 중 “수입품목”을 “수입 품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”을 “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”으로, “각호의 1과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농업·축산농업협동조합”을 “농업·축산업협동조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농·축·임산물”을 “농·축·수·임산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농업관련단체등”을 “농업관련단체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군수에게 위탁신청”을 “군수의 위탁운영계획 공고기간 중 수탁운영 신청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하며,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”을 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”을 “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10”을 “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,000분의 10 이상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탁받은”을 “수탁 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홀히하여”를 “소홀히 하여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익상”을 “공익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인정할 대”를 “인정할 때”로, “수탁운영”을 “수탁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사항은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”를 “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